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에 따른 역할 확대〉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2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취지 및 구성체계	4
(1)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4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5
(3) 총괄 의견	8
2. 주요 사항별 검토	11
(1) 법안 제명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11
(2) 정의 규정(안 제2조)	12
(3) 법인 설립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안 제3조 ~ 제6조)	18
(4) 재단의 사업(안 제7조)	20
(5)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안 제8조 ~ 제17조)	26
(6) 대학혁신진흥기금(안 제18조~제24조)	31
(7) 보칙 등(안 제25조 ~ 제35조)	38
(8) 부칙	4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5.
3. 회부연월일 : 2025.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등록금 동결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육·연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주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및 일부 사업 지원과 관리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된 고등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관리,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재단의 명칭과 설립 목적을 변경하고, 국·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공시, 재정진단, 대학 구조개선과 청산지원 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명칭 변경 및 설립 목적 확대(안 제1조)

재단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을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확대함.

나. 정의 규정 신설·정비(안 제2조)

고등교육기관, 사학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 청산, 경영관리, 정보화, 실태점검, 성과관리, 학교복합시설 등 법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

다. 재단의 기능 확대(안 제7조)

기금 조성·운용,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재정지원 조사·배분·성과관리·실태점검, 재정정보 집계·관리, 법령 준수 점검, 조사·연구, 경영혁신 지원, 청산 절차 지원, 기록물 관리, 위탁사업 수행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규정함.

라. 폐교·해산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20조제2항)

학교법인 해산 및 폐교 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잔여재산 처리, 기록물 관리 근거를 마련함.

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16조)

임원 구성·임명 절차, 임기, 직무,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겸직 제한, 직원 임면 등 조직·운영 규정을 구체화함.

바.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확대(안 제17조)

재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함.

사. 대학혁신진흥기금 설치·운용(안 제18조~제24조)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 감독 및 준용 규정(안 제33조·제34조)

교육부장관의 감독권, 검사 및 명령권을 명시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함.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및 구성체계

(1)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 목적 조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사학기관에 대한 자금 융자 사업, 사립대학 법인의 청산지원 등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 목적 조항과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목적은 ‘사학기관 진흥’에 국한되어 있어, 국·공립 대학은 지원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법인의 재정 안정과 관리역량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1989.12)되었으므로, 국·공립학교를 포괄하는 고등교육 기관 전반의 대학혁신·지역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정원 미충원 문제와 이에 따른 경영 위기 및 재정 악화 문제 등은 국·공립·사립대학을 막론한 전체 대학이 직면한 문제이지만,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재정진단’ 역시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대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필요함.

- ☐ 이에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을 포괄하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 ☐ 개정안은 35개의 본칙,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안의 체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제1조2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법인)	제3조 (법인)
제3조(설립)	제4조 (설립)
제4조(정관)	제5조 (정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사업)	제7조 (사업)
제7조(임원)	제8조 (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등)	제9조 (임원의 임기 등)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 (결격사유)
제11조 (이사회)	제12조 (이사회)
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제13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4조 (직원의 임면)
제14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제1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 (대학혁신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기금의 사용)	제20조 (기금의 사용)
제19조2 (기금의 예탁)	제21조 (기금의 예탁)
제19조의3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22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1조(자금의 융자)	제24조 (자금의 융자)
제22조(회계연도)	제25조 (회계연도)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제27조 (결산 등의 보고)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제26조(차입)	제29조 (차입)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제30조 (대학혁신진흥채권의 발행)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제31조 (이자차액의 보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29조(출연금)	제32조 (출연금)
제30조(감독)	제33조 (감독)
제31조(준용)	제34조 (준용)
제32조(과태료)	제35조 (과태료)

□ 개정안에 의해 개정되는 주요 조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목적을 ‘사학진흥’에서 ‘고등교육 혁신’으로 변경하고 있음.

안 제7조는 한국대학혁신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조사 및 각종 실태점검,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신설하고 있음.

안 제18조는 사학진흥기금의 명칭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에서 구조개선지원계정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3) 총괄 의견

-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근 고등교육기관들은 학령인구 감소, 재정 여건 악화, 지방대학 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등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대학과 달리 사립학교법인이라는 민간 법인이 수행하는 공적 교육 기능을 보완·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나,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국·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관리·감독 권한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의할 때, 재단이 국·공립대학에 대하

여 실태점검,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재단이 다른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리·감독 체계의 중첩 및 행정 책임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법률체계 면에서 살펴보면, 안 부칙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타법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제명이 「한국대학혁신재단법」으로 변경되고, 재단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타법개정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셋째, 개정안에 의할 때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및 기금 내 각 계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승계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학진흥재단의 권리·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등 기관 명칭이 현재의 역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

육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등교육 정책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재단의 기능 확대로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 및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협의회는 재단이 대학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요 사항별 검토

(1) 법안 제명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제명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서 「한국대학혁신재단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목적 규정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u> 을 설립하여 <u>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대학혁신재단(韓國大學革新財團)</u> 을 설립하여 <u>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 (목적) 사학기관 지원에 국한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능을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혁신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단명 및 목적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재단이 수행하던 고유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명칭과 목적을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정의 규정(안 제2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에 대한 정의 이외에, ‘고등교육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 ‘청산’, ‘경영관리’, ‘정보화’, ‘실태점검’, ‘성과관리’, ‘학교복합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부가 주무부처인 학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대학”이란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한다. 4. “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혁신”이란 고등교육기관 또는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과정, 경영, 재정, 인프라, 학생복지 등 전반에 걸쳐 교육의 질 향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수요 반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6. “청산”이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해산 또는 폐지되는 경우, 법률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자산의 정리, 채무 변제 및 기록물 보관 등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경영관리”란 고등교육기관 또는 학교법인의 조직, 인사, 회계, 시설, 정보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효율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정보화”란 고등교육기관의 행정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전산화,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데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터 수집·분석을 통해 경영 및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실태점검”이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 실태, 재정 상황,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10. “성과관리”란 고등교육기관이 재정지원 사업 등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집행 결과와 영향을 지표 등을 통해 측정·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 (정의) 안 제2조에서 제1호는 고등교육기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면서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학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부 소관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학교’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안 제2조제2호 ‘사학기관’에 대한 정의는 현행과 동일하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하도록, 같은 호 다목을 나목과 같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력·학위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정의 이외에 '산학협력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정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각각 '혁신', '청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법적 효과의 발생 대상 등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를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임.

특히, '청산'은 그 자체로서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청산인과 청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에서 '청산'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안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9호 실태점검 및 안 제10호 성과관리는 안 제7조(사업)제3호에서, 안 제7호 경영관리 및 안 제8호 정보화는 제7조(사업)제6호에서, 각각 한국대학혁신재단의 사업을 설명하는 용어로만 사용되고, 안 제11호 학교복합시설은 제20조(기금의 사용)제1항제5호에만 사용되는데,

정의 규정의 취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고, 해당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¹⁾ 사용빈도가 적은 용어를 정의 조항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 안 제7조(사업)과 제20조(기금의 사용)에 직접 규정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2조제9호는 “실태점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실태, 재정상황,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행정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³⁾가 있음.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단이 행정조사로서의 실태점검을

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244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702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혹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 제7조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함.

(3) 법인 설립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안 제3조~제6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3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한국대학혁신재단’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4조 ~ 제6조는 법인의 설립, 정관 및 법인과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2조(법인) <u>한국사학진흥재단</u>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 <u>한국대학혁신재단</u>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대학혁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법인, 설립, 정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해당 규정들은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함이 없이 현행 재단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4) 재단의 사업(안 제7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재단의 사업 목적이 ‘사학기관 진흥’에서 ‘고등교육 혁신’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대학혁신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개정안 제7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사업은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현행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u>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제7조(사업) ① 재단은 <u>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학혁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3.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조사, 재정배분, 성과관리 및 각종 실태점검 4. 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 및 관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5. 고등교육기관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6. 고등교육기관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등 자원관리 지원 7. 고등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고등교육기관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9.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그 밖에 고등교육기관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사업) 안 제7조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 중인 사업 이외에 ①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조사, 재정배분, 성과관리 및 각종 실태점검, ②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 및 관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③고등교육기관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④고등교육기관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등 자원관리 지원 등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재단 사업 범위 비교>

현행	개정안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 대학혁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현행	개정안
	6. 고등교육기관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등 자원관리 지원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5. 고등교육기관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3.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조사, 재정배분, 성과관리 및 각종 실태점검
-	4. 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 및 관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3의2. <u>사립학교법인</u> 에 대한 청산절차 지원	7. <u>고등교육기관</u> 에 대한 청산절차 지원
3의3. 해산·폐지된 <u>사립학교법인</u> 의 기록물 관리	8. 해산·폐지된 <u>학교법인</u> 과 <u>고등교육기관</u> 의 기록물 관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u>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u>	11. 그 밖에 <u>고등교육기관 혁신 기반 조성</u> 을 위한 사업

□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조사, 실태점검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고등교육기관은 국·공·사립 학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2026. 8. 시행예정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0조 등에 따라 ‘구조개선’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과 관련하여 안 제7조에 규정된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제2호),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 조사, 재정배분, 성과관리 및 각종 실태점검(제3호), 재정정보 집계 및 관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제4호),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등 자원관리 지원(제6호)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공립대학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로서 강학상 영조물에 해당하여 행위의 주체가 설립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위임·위탁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안 제7조제1항3호의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실태점검”을 “행정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활동임.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에서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아야 함.

4)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행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8항5)에 따라 고등교육 대학재정 정보 집계·분석·공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8항제1호 및 「사립학교법」 제31조의26)에 따라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각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들로 현재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음.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 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 「고등교육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6)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 또한 개정안 제7조제5호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은 내용이 모호하므로, 고등교육기관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 제2조 정의 조항에 규정된 내용 중, 안 제9호 실태점검 및 안 제10호 성과관리는 안 제7조(사업)제3호에서, 안 제7호 경영관리 및 안 제8호 정보화는 제7조(사업)제6호에서, 각각 한국대학혁신재단의 사업을 설명하는 용어로만 사용되므로, 안 제7조(사업)에 안 제2조(정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현행 재단의 사업범위가 이미 사립대학 지원 기능을 넘어 고등교육 전반으로 확장된 점을 고려할 때, 법적 기능과 실제 수행 업무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안 제7조제1항10호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안 제7조제1항3호 및 제4호 등은 교육부의 소관 업무로서, 특정 공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기관의 관할을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5)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안 제8조~제17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9조 ~ 제16조는 임원 및 이사회,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현행 재단 운영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 개정안 제17조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이 안 제21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현행법(30년)과 달리 그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1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u>30년 이내</u>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21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u>50년 이내</u>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임원 및 이사회)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능을 고등교육기

관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들은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함이 없이 현행 재단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 7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포함⁷⁾되어야 하며, 교육부 주무 정책관, 기획재정부 주무 심의관⁸⁾은 당연직⁹⁾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의할 때 사학기관 이외에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재단의 기능을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안 제17조제2항은 안 제21조제1호¹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7조(임원)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8) 「정부조직법」 개정('26. 1. 2. 시행)으로 인한 정부 부처 직제명 변경에 따라 임원 중 기획재정부 당연직 이사 소속을 기획예산처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제250회 이사회('26.1.19.)에서 의결했으며, 교육부의 인가(승인) 요청 중

9) 「한국사학진흥재단 정관」 제5조(임원)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에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교육부 주무 정책관(또는 국장)

2. 기획재정부 주무 심의관(또는 국장)*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여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기숙사 사업으로, 대여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 관계기관 의견으로,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특정단체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을 발생시키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30년의 기간을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0)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21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혁신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20조(기금의 사용) ① 대학혁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3.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학기관과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6) 대학혁신진흥기금(안 제18조~제24조)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제18조는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학진흥기금 내의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을 각각 대학혁신지원계정 및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있음.

기금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 계정의 재원은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의 재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각 계정의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17조(<u>사학진흥기금</u> 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u>사학진흥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u>대학혁신진흥기금</u> 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u>대학혁신진흥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u>사학지원계정</u> 및 <u>청산지원계정</u> 으로 구분한다.	② 기금은 <u>대학혁신지원계정</u> 및 <u>구조개선지원계정</u> 으로 구분한다.
제18조(기금의 구성) ① <u>사학지원계정</u>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제19조(기금의 구성) ① <u>대학혁신지원계정</u>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3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u>청산지원계정</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u>사학지원계정</u>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u>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u>구조개선지원계정</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 ① <u>대학혁신지원</u>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사학진흥기금</u>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학기관과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u>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u>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대학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조개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한다. <u>1. 사학기관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사업</u> <u>2.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u> <u>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u> <u>4. 그 밖에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u> 제21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대학혁신진흥기금</u>에 예탁할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u>제4호</u> 에 따른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나. 검토의견

□ (대학혁신진흥기금) 안 제18조는 재단의 명칭 및 기능 변경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사학진흥기금”에서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기금의 명칭을 “대학혁신기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금 내 각 계정의 명칭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에서 “대학혁신지원계정 및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개정안의 취지와 기금의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사학진흥기금(대학혁신진흥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7,299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 기준 4,111억원 수준의 기금 예산이 편성되었음.

<한국사학진흥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6년(A)	2025년(A)
수입	○ 자체수입	196,982	176,255
	- 용자금 및 이자, 연체료,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196,982	176,255
	○ 정부내부수입	188,005	357,264
	- 공자기금예수금	114,514	172,840
	- 주택도시기금예수금	73,491	62,637
	- 일반회계전입금	-	121,787
	○ 여유자금회수(전년도 이월금)	26,090	31,520
합 계		411,077	565,039
지출	○ 사업비	250,476	369,845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178,646	218,063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69,191	29,737
	-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100	200
	- 학교경영 지원사업	1,843	1,099
	-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96	696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사업	-	120,050
	○ 기금운영비	8,156	7,996
	- 인건비	6,439	6,197
	- 기타경비(운영비, 재정분석)	1,717	1,799
	○ 정부내부지출	124,957	162,568
	- 공자기금원리금 및 이자상환	90,682	132,268
	- 주택도시기금원리금 및 이자상환	34,275	30,300
	○ 여유자금 운용(차년도 이월금)	27,488	24,630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기금의 조성) 안 제18조는 대학혁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기금 내 각 계정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현행 각 계정의 재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기금의 사용) 안 제20조는 기금 내 각 계정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 역시 확대하여, ①대학혁신지원계정은 현행 사학지원계정에서 사용하는

각 사업 이외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사학지원계정 내의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이관함.

‘학교복합시설’은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법률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범위를 초·중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에서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¹¹⁾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러한 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용자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취지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101)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¹²⁾임.

1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8호, 2025.1.21. 개정, 2025.7.22. 시행)

12) 기획재정부는 사학진흥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 제20조제2항은 ②구조개선지원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산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 구조개선과 관련한 사업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업 범위의 규정은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보칙 등(안 제25조~제35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27조는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사학진흥채권’을 ‘대학혁신진흥채권’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이 외에 기타 규정 등은 현행 체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혁신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7조제3항은 정부가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려는 취지임.

사학진흥채권은 최초 재단 설립 시 기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였으나, 사학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액 상환하여 현재 발급되고 있지는 않음.

<사학진흥채권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94	'95	'96	'97	'98	'99	'00	계
발행액	175	710	880	310				2,075
상환액 (원금)				(50)	(510)	(685)	(830)	(2,075)
잔액	175	885	1,765	2,025	1,515	830	-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채권이 2000년 이후 발행되지는 않았으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대규모 구조개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기금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한 것이라는 입장임.

□ 다만, 정부 보증에 관한 입법례¹³⁾를 살펴보면, 「국가철도공단법」은 정부 보증 규정이 존재하나, 「도시철도법」은 정부 보증 규정이 부존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시 정부보증 관련 규정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13)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이외에 안 제25조 ~ 제29조 및 안 제30조 ~ 제35조는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고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8) 부칙

한국대학혁신재단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한국대학혁신재단법」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기금 명칭 및 채권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있음.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동 개정안에 따라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조직 및 예산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일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타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제명 변경 등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재정법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타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타법 개정 필요사항>

구분	조문내용
「사립학교법」 제35조 제48조의2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 (생략)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 (생략) 8의3. ~ (생략)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제7조의2(회원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9. ~ (생략)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생략) (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생략)

-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관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간주하고, 종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위를 한국대학혁신재단의 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종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산, 권리, 의무를 한국대학혁신재단이 승계하는 조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193